

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(제56조관련)

1.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: 3만원
2.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소재지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·신고 : 2만원
3.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 허가(품목당) : 1만원
4.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변경허가·신고(품목당) : 5천원
5. 동물약국 개설등록: 1만원
- 5의2. 동물약국 개설신고(변경신고): 5천원
6.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: 2만원
7.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(변경신고) : 1만원
8. 허가증·등록증 재교부신청 : 1천원
9. 기타 그밖의 허가·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: 5천원
- 9의2. 지위 승계 신고: 1만원
10. 제조관리자등의 승인 및 변경신고 : 1천원
11. 동물용의료기기·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: 3만원
12.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: 1만원
13. 허가사항 영문증명 : 5천원
14.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 신고: 1만원
15.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: 1만원
16.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 : 5천원